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6. 29 선고 2021가단202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0.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권은석

별지1

목록

1. 제천시 D 대 418㎡

2. 제천시 D

[도로명주소] 제천시 E

벽돌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창고

1층 22.80㎡ 창고, 2층 99.99㎡ 단독주택

3. 제천시 F 창고용지 1230㎡

4. 제천시 G 답 127㎡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은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C의 상속분을 사해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주식회사 H은 2007. 4. 4. 소외 C에게 금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만료일 2010. 4. 4., 이자율 연 66%, 연체이자율 연 66%로 각 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H은 2008. 9. 30. 주식회사 I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I는 2014. 6. 1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4차전28386), 2014. 10. 17.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C은 원고에게 금 16,130,783원 및 그 중 금 2,186,475원에 대하여는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 (2) 그러므로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항의 채권액인 16,130,783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 (1) 소외 C의 아버지는 소외 J이었는데, 위 J은 2020. 1. 8.경 사망하였고, 위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상속인 J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J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0. 10. 6.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2) 대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권리 포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인 소외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재산인데, 위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음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

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3)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소외 C 사이의 2020. 1. 8.자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징

가. 피상속인 J은 2020. 1.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B(피고, 수익자)과 자식들인 K, C(채무자), L이 있었습니다(갑 제13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15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은 모자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위 J은 2020. 1. 8.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0. 10. 5.'입니다(갑 제15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0. 10.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소장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별지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갑 제15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갑 제11호증 및 갑 제12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이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부동산을 사해행위취소 대상부동산으로 추가하면서, 별지목록을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은 채무자 C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